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99
----------	-------

발의연월일 : 2026. 9. 10.

발 의 자 : 송영길 · 임문영 · 허종식
민병덕 · 서미화 · 박선원
김교홍 · 임미애 · 김영호
양부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제청과 관련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법관 결원 장기화와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되어 온 것인바,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 및 대법관 후보자 추천·제청의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면서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

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청할 대법관”을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청할 대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중전의 제8항) 중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면(임명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임명된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1. 사망·탄핵 등으로 대법관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2. 임기 만료·정년 도래·대법관 증원 등으로 대법관 결원이 예정된 경우: 대법관 결원이 예정된 날의 60일 전까지

⑧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가 추천(제9항에 따른 추가 추천을 포함한

다. 이하 제10조까지에서 같다)한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을 제청하려는 때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관을 제청하여야 한다.

⑨ 추천이 있었음에도 대법원장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청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명(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마다 1명)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종전에 추천된 후보자에 추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사퇴 등으로 자격이 없게 된 대법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게 된 각각의 대법관 후보자마다 1명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

⑩ 누구든지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종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법관 충원의 사유의 발생 시기에 따른 추천위원회 구성 시기

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가 이 법 시행일 이후 14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결원이 발생한 날”은 “이 법 시행일”로 보고, 제41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법관 결원이 예정된 날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대법관 결원이 예정된 날의 60일 전까지”는 “이 법 시행일부터 14일 이내”로 본다.

제3조(대법관 후보자 추천 절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자 추천이 있었으나 그에 관한 대법관 임명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제외한다)는 제4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종전의 추천위원회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제41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추가 추천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및 제41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청되었으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후보자
2. 사망·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의 자격이 없게 된 후보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생략) ② <u>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구성되어야 한다.</u> 1. <u>사망·탄핵 등으로 대법관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u> 2. <u>임기 만료·정년 도래·대법관 증원 등으로 대법관 결원이 예정된 경우: 대법관 결원이 예정된 날의 60일 전까지</u>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u>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청할 대법관</u> ----- ----- ----- -----.
③ ~ ⑤ (생략) ⑥ <u>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u> ⑦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u>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청할 대법관</u> ----- ----- -----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가 추천(제9항에 따른 추가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제10조까지에서 같다)한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을 제청하려는 때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법관을 제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추천이 있었음에도 대법원장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청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명(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마다 1명)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종전에 추천된 후보자에 추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사퇴 등으로 자격이 없게 된 대법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없게 된 각각의 대법관 후

<신 설> ⑧ <u>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u>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u>보자마다 1명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u> ⑩ <u>누구든지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종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u> ⑪ <u>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되면(임명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임명된 경우를 말한다)</u> -----. ⑫ ----- 제11항----- ----- ----- ----- -----.
--	--